

# OPEC의 石油판매부조과 판매행태

OPEC(石油輸出國機構)는 갈수록 重病으로 번져가는 내부증상의 치료방법을 모색해 온 끝에 결국 이러한 우환의 근본원인으로서 회원국들의 갖가지 변칙판매에 초점을 맞추기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판매부정 형태들이 OPEC 내부 질환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질환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적 증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갖가지 변칙판매 형태에 대한 논의는 지난 여름 암마니 사우디 아라비아 石油相이 자국의 하계 首都 타이프에 9개 OPEC 회원국 석유상들을 초치, 회담을 가질 때부터 토의되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서 9개국 石油相들은 사우디도 줄어드는 석유수출을 회복시키기 위해 여타 회원국들간에 성행하는 할인판매를 흉내낼 수 밖에 없게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할인판매를 근간으로 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油價침체의 탓으로 매도하기는 쉬운 일이지만, 이를 막는 문제는 보다 난해한 복잡성을 띠고 있다. 그것은 암마니 石油相이 의장직을 맡고 있는 OPEC각료 집행이사회가 전문가들에게 판매부정에 대한 규명요구를 해 왔을 때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지난 9월 중순에 제출된 전문가단의 보고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석유수출국들이 국내에서 생산, 채 소비하지 못한 原油를 FOB 이하의 가격으로 파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 복잡한 판매행태

개별 회원국들의 판매 행태에 대해 부정판매의 정의를 확대 적용하는데서 부닥치는 문제들은 OP

EC가 기준원유에 토대를 둔 고정가격의 방위에서 당면해야 했던 장기적 난관을 잘 말해주고 있다. 차등가격 결정에 있어서 통일된 방법론의 결여, OPEC가격 합의 체계에서 超重質油의 제외, 일부 회원국의 제품생산, 국내소비와 수출물량 구분상의 모호성 등은 개별판매 조치들에 대한 할인여부 판명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보고이다. 거기에 더해서 製品, 콘텐세이트, LPG 등에 대한 자유로운 가격 책정, 原油와의 일괄 판매 등이 公式價格에 대한 위반이 되지 않는 것도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며, 빈곤 개발도상국에 대해 원조의 명목으로 공여되는 값싼 원유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보고서는 해당국가의 이름은 지적하지 않은채 모든 OPEC 회원국들을 망라해서 그러한 판매행태를 예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OPEC가 이러한 판매방식에 제재를 가할 수도, 실질적인 제거를 장담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이들은 석유수출국들이 현재와 같은 침체시장 국면에서 판매 세어의 유지 또는 신장을 위해 앞으로 또 다른 형태의 할인판매 수법을 창안해 낼 수도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이들은 부정판매 행위가 반드시 옳지 못하다는 획일적 개념은 일축하면서도 그러한 행위들이 공급에 미치는 혼란의 정도에 의해 평가되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OPEC전문가들은 회원국들이 油價를 속이는 방법에 대해 20여 유형으로 구분했으며, 각각의 유형이 미치는 피해의 정도에 대한 등급 평정은 하지 않았다. PIW가 발췌 요약한 OPEC 전문가들의報告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原油의 변칙판매

현물시장판매 혹은 現物연계판매 : 위축된 시장 정세에서는 原油의 스파트 가격이 일반적으로 公式價格보다 싸다. 따라서 선적분의 일부를 스파트 가격에 둑고 나머지에 公式價格을 부과하는 식의 스파트 연계조건 판매 또는 스파트 시장에서의 原油 판매는 부당행위가 된다. 스파트거래를 삼가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돼 온 OPEC의 원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OPEC 原油가 중간상인을 거쳐 스파트 市場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 일방적인 차등가격 및 공식판매가격 책정 : 실제로는 할인판매나 마찬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 OPEC 설정가격 또는 公式價格에 위반되는 일방적인 차등가격의 변경 : 차등가격 변경은 OPEC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

- 일시적으로 할인가격을 시행했다가 영구적인 것으로 고정시키는 수법 : 일시적으로 프리미엄을 붙였다가 나중에는 公式價格에 합산, 기정사실화 하곤 했던 1979년도 유행수법과 유사하다.

- OPEC 회의에서 가격책정되지 않은 原油를 사용하는 수법 : 내수용 또는 특수성을 인정하는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OPEC 회의가 가격책정에서 제외 시킨 틈을 이용한다.

- 정치적, 인도적 배려 또는 유대관계들의 사유에 따른 명백한 할인판매 : 이러한 거래는 관련 회원국의 국제정치적인 문제이다.

- 공식가격 原油를 지분원유등 OPEC 회의 책정 제외 原油에 끼워 팔기

- 정부 또는 국영석유회사가 정부 소유회사나 기관에 판매하는 것 : 公式價格에 매매될 수도 있으나, 매입하는 회사 또는 기관은 나중 매입원유를 공식가격보다 낮은 값에 방출시킨다.

## 製品의 할인판매

- 석유제품의 수출 : 製品가격은 OPEC 회의 결정에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초과 정제시설 또는 수출용 정제시설을 보유한 회원국들은 생산원유의 일부를 제품으로 정제해서 수출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시장침체 상태에서는 제품의 스

파트 시장가격이 공식 FOB 原油 가격에서 상당폭 할인한 것과 같다. 그러나 기존의 수출지향 정유시설을 보유한 회원국들은 정유공장을 폐쇄함으로써 초래되는 경제적, 사회적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정제시설 가동을 계속하는 쪽을 택하려 할 것이다.

- 일괄판매(묶어 팔기 또는 끼워 팔기) : 한가지 혹은 그 이상의 生產原油를 공식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활용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제품이나 콘센세이트가 OPEC가격의 규제권외라는 점을 이용, 이를 낮은 가격에 팔면서 여기에 공식가격의原油를 묶어 파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 방식의 거래는 LPG, LNG 및 석유화학 제품에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 정유공장 貨加工 거래 : 국내 정제설비의 능력이나 특성으로 인해 1개 또는 그 이상의 제품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적합한 해외 정제지역의 정유공장을 임대, 原油를 정제하게 하여 국내수급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제품을 환수하고 나머지 제품을 스파트 시장에 방출하는 방법이다. 또 자국의 시장 세어를 증대시키려 할 때 이 방법을 써서 原油를 국외 정유공장에서 정제 처리하여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량 스파트시장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침체시황에서는 공식 FOB가격을 밀도는 네트백가격이 산출되기 때문에 양자 모두가 原油價格의 할인 의미를 갖게 된다.

- 네트백가격의 위탁정제 : 공급원유의 가격을 현재의 스파트 가격에서 운임과 정제비를 뺀 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식. 이 방식은 정제업자에게 확실한 이윤을 보장한다.

## 트레이드상의 조정조치

- 바터거래 : 일반 원제품과의 原油 바터거래는 공식 원유가격 베이스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原油수출국에 출하된 상품의 OPEC가격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식가격을 사용했다고 해도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 바터거래는 석유제품이나 콘센세이트가 거래원유에 함께 포괄될 경우 훨씬 복잡해진다. 카운터 트레이드나 평행거래도 이와 유사하다.

## 原油 인도 조정조치

- 선적자에 대한 수송비·보험료 공제 : 가상의 낮은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C & F 또는 CIF 기준 原油공급도 이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

- 판매자가 수송비·보험료 일부를 부담하고 原油價格을 산출하는 방식 : 이 방식은 장거리 수송 원유의 수송거래를 단거리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판매자가 구매자의 정유공장과 가까운 터미널에 原油를 풀어 놓음으로써 구매자에게 FOB 가격에서의 할인 효과를 부여하게 된다.

- 판매자가 구매자의 비축시설을 사용하는 형식의 명목상 임대료 지불조건으로 原油를 수송하고 구매자에게 비축비용을 실제로 지불하는 인도 방식 : 이 原油에 대한 판매자의 비축비 지불은 구매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경우 비축은 가상적인 것이며, 사용일자는 경제업자로 하여금 신용기간을 연장시키고 보다 유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해진다.

### 지불절차에 따라

- 신용기한 연장 : 信用기한을 2~3개월 연장

시킴으로써 공식가격 또는 판매가격에 대한 실질적 할인의 효과를 제공한다.

- 선적분 전량 또는 일부 대금을 저리 혹은 무이자로 응자해 주는 방식 : 이 방식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재정원조를 제공하거나 다른 나라들과 재정협약을 체결한 회원국들의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 原油代金 지불을 위한 10년 이상의 장기융자 : 저리 혹은 무이자 응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의적인 판매부정 행위라기보다는 회원국의 원조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지분에 대한 마진

- 생산 할당제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지분원유 또는 전체 생산원유에 대한 지분 회사의 마진 조정이 原油판매의 할인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마진조정은 직접적(정부법령에 의해 마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간접적(로열티 및 세율, 생산코스트 등의 감축조치)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지분회사의 마진을 인상은 실질적인 原油價格 할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PIW)

## □ 海外石油產業動向 □

### 日本石油連盟 21世紀

### 에너지비전小委발족

日本石油連盟은 오는 21세기를 향해 나아갈 석유업계의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通產省·資源에너지廳이 설치한 「21세기에너지 비전 檢討委員會」의 하부조직으로 「21세기에너지 비전問題小委員會」를 발족시켰다.

이 소위원회는 鹿島實 日本石油상무를 위원장으로 하여 회원사의 임원 및 부장급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이 소위원회는 資源에너지廳의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업계간의 의견조정기능도 수행한다. \*